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0월 13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년 9월 29일

나. 제안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9월 30일

라. 상정일자: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1.10.13.)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협치분권과장 김영선)

제안이유

한반도의 평화 증진을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구성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발굴·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 적(안 제1조)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지자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구 성(안 제3조)

협의회는 별표의 지자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자체의 장으로 구성

※ 2021. 9. 기준 구성 현황: 61개 지자체(의회 의결절차 진행 중인 지자체 포함)

다. 조 직(안 제4조)

1)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상(임기 1년, 연임 가능)

2)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

라. 회 의(안 제5조)

1) 총회는 정기회의(상·하반기 각 1회)와 수시회의로 구분

2) 정기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상정 안건을 제출하도록 통보

3) 개최 10일 전까지 협의회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배포

마. 협의사항(안 제6조)

1)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등의 교류와 협력

2)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남북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

바. 협의사항의 조정, 사무처리 효력(안 제8조 ~ 안 제9조)

1)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이 조정을 요청하면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함

2) 협의회 구성 지자체는 협의회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함

사. 실무협의회(안 제10조)

1) 공통 관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음

2) 위원은 관계 지자체 소관 분야 업무 담당 국장(급)으로 구성

3)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임기 1년, 연임 가능

아. 자문위원, 사무국(안 제11조 ~ 제12조)

- 1)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협의회 승인을 받아 위촉
- 2)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남북협력 추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자. 경비부담(안 제13조)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관계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함

차. 회계연도 및 결산(안 제15조)

- 1)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나. 예산조치: 비예산(2021년 경기도 30백만원 임시부담)

지자체 간 분담금 합의 시 다음연도부터 예산 편성

다. 합의기관: 경기도(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추진)

라. 기 타

- 1) 입법예고: 해당없음
- 2) 신·구 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해당없음

- 4) 규제심사: 해당없음
-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 6)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최광호)

- 본 동의안은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설립·추진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정부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구성 및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 2020. 12.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앙정부의 대북정책 보완은 물론 주도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해졌고,
- 본 협의회 참여를 통하여 지자체 간의 정보교류,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그 취지와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별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2021. 9. 7. 기준)

구 분	지방자치단체명	비고
경기 (32)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과천시, 연천군	61개
서울 (7)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 노원구, <u>중구</u> , <u>성동구</u>	
부산 (5)	연제구, <u>금정구</u> , <u>남구</u> , <u>동구</u> , <u>해운대구</u> ,	
인천 (1)	<u>연수구</u>	
대전 (1)	대덕구	
울산 (3)	울주군, <u>북구</u> , <u>중구</u>	
강원 (1)	<u>태백시</u>	
충남 (5)	당진시, 부여군, 논산시, 공주시, <u>청양군</u>	
충북 (1)	<u>제천시</u>	
경남 (4)	거제시, 합천군, 통영시, <u>고성군</u>	
전북 (1)	<u>익산시</u>	

※ 14개 지방정부 규약동의안 의회 의결절차 진행 중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